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9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고민정·김문수·진선미
김준환·박정현·임호선
문진석·한정애·이성운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혁신선도지역”이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협약기관”이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혁신선도지역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교육혁신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이라 한다)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 공교육 혁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규제특례를 활용한 교육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을 적정 규모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선도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제5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선도지역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지역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도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황
3. 선도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선도지역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내용
5.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교육혁신협의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선도지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

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에는 해당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지역 협약안의 작성
2. 선도지역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선도지역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5. 그 밖에 선도지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선도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혁신 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의 지정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계획(이하 “선도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3장의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선도지역의 변경)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의 지정이나 선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선도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선도지역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①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은 선도지역의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신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선도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선도지역을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도지역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이하 “선도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선도지역 협약 및 선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정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선도지역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선도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도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선도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도지역 운영 전담조직)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선도지역 운영의 성과관리)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제출의 방법·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특례

제15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거점형 돌봄 및 교육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방과후에 여러 학교 학생의 돌봄 및 교육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활용하여 거점 형태로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학교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중 거점형 돌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교

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

⑤ 교육감은 거점형 돌봄 및 교육 등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돌봄 및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운영 중에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통학 여건이 열악해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에 관한 특례) ①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로의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지역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장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은 그 사무 처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선도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선도지역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선도지역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익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선도지역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도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